



보도시점 2026. 4. 14.(화) 배포 시 배포 2026. 4. 14.(화)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은 전면 허용이 아님

< 주요 보도내용 >

4월 14일(금) 머니투데이는 「신재생에너지 뜨자 별드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제목으로 입법 과정 중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 내재화(주민 환원)의 3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며, 농업·농촌 현장 내 질서있고 단계적인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농업적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개별적이고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전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소형 (044-201-2851)
		담당자	사무관	권준엽 (044-201-2855)